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26 선고 2024가단52605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0. 29.

판결 선고 2024. 11. 26.

주 문

- 가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5지분에 관하여 2020. 12. 2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,2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원고에게 5,2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-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노한동

별지